

미국과 영국의 다인종 다문화 수형자의 언어적 지원과 정책적 함의

서경숙*

요약 본 연구는 미국과 영국에서 실시하는 다인종 다문화 수형자를 위한 지원 정책, 특히 언어적 지원 정책을 고찰하고 이를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논의의 배경으로 언어적 권리의 개념과 UN과 유럽 연합의 수형자의 권리 규정 중 언어적 권리를 규정한 부분을 살피고 이러한 권리 규정이 미국과 영국 사례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행정명령이나 규정으로서 다인종 다문화 수형자를 위한 언어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다인종 다문화 수형자들의 언어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언어적으로 소통되지 않는 다인종 다문화 수형자들이 완전히 고립되지 않도록 적절한 통번역 및 모국어 자료의 제공, 영어 교육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정책은 한국의 다인종 다문화 수형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모어 지원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고도 실천적인 적용 방안도 모색해 볼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다인종 다문화 수형자, 언어적 권리, 한국어 교육 지원, 모국어 지원

*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어통사론, 국어자문관, kay0616@scourt.go.kr

1. 서론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당국의 기소율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수형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형이 확정된 외국인 수형자들은 본국으로 이송되거나¹ 한국에서 형기를 마치도록 하는데 남성 수형자인 경우에는 대전교도소와 천안교도소에, 여성 수형자인 경우에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전담하여 수용하고 있다. 법무부(2021) 교정본부에서 발표한 『2021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848명(미결수 350명)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20년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445명(미결수 1,006명)으로 나타났다.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국적을 가진 수형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태국, 베트남, 미국,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으로 수형자들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모로코 국적의 남성이 가혹 행위를 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미결수를 포함한 수형자들의 인권 문제, 한국의 보호 시설과 수형 시설의 외국인 처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²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인권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³는 외국인 이주자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이번 사건을 비판하고 나서며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엄중히 지적하였다(고대영 2021). 가혹 행위를 당한 남성의 모국인 모로코 현지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자국민에 대한 “충격적인 대우”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국제적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

1 국제 이송 제도는 외국인 수형자들이 외국에서 받은 형을 모국에서 집행하게 하는 제도로, 외국인 수형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제 이송 제도에 대해서는 서범정(2006), 김학성(2009)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이 사건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 남성이 손과 발이 수갑과 포승줄로 묶인 ‘새우껍기’ 자세로 4시간 정도 독방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고대영 2021). 법무부는 해당 남성의 과거 형사 처벌 사실을 공개하며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해 불가피하게 조치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보호소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3 1978년 설립되어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인권 확대 사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러 국가들이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감시하는 일을 한다.

게 되었고 아울러 체류 및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들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외국인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는 외국인의 수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수형자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외국인 범죄자의 증가는 한국의 사법 제도와 교정 제도에 중요한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국내법에 무지하고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피고인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외국인 피고인들은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중형을 선고받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다는 보고가 있다(박형민 외 2016: 217-218). 외국인 수형자들은 자신의 형기를 마칠 때까지 교정 시설에 머물러야 하는데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교정 당국의 입장에서 의사소통의 한계는 안정적 교정 지도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대전교도소와 천안외국인교도소의 외국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윤옥경·이현영(2011)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수형자의 33%가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반대로 한국어를 잘한다고 응답한 수형자는 겨우 12%에 그쳤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무부에서는 중국어나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등 주요국 수형자들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40여 개국의 다양한 국적을 지닌 수형자들 각자의 언어를 모두 제공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한국어 교육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교정의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 수형자들의 인권과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올바른 교정을 위해 의사소통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 수형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수일 경우 함께 지내는 외국인 수형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일종의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로서 최소한의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며, 건강이나 교도소 내의 긴박한 생활 관련 상담을 위해 수형자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모국어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인종 다문화 수형자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이를 실천해 온 선진국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과 영국

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과 영국의 다인종 다문화 수행자들의 지원 프로그램, 특히 언어적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언어적 권리(linguistic right)

언어는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학습하며 사회생활을 유지해 나간다. 즉, 의사소통은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며 이익을 추구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어가 동물과 구별 짓는 인간만의 특질이며 당연한 권리임은 명확하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언어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며 언어로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언어적 권리(linguistics rights)는 ‘인간이 의사소통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언어를 차별 없이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인간의 권리’(류성진 2019: 106)를 의미한다. 아래 <표 1>과 같이 국제인권법에서 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표 1.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언어적 권리

국제법	조항	내용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제2조	언어로 인한 차별을 금지함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2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조	언어로 인한 차별을 금지함
	제24조	아동에 대한 언어 차별을 금지함
	제27조	소수민족의 언어에 대한 권리를 확인함

민족/인종, 종교 및 언어적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유엔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or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제1조	사적 영역 및 공적 영역에서 차별 없는 언어 사용의 권리를 보장함
	제4조	언어적 소수자에 대해 모어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
세계 언어권리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Linguistic Rights)	제1조	언어공동체의 정의와 존중
	제3조 제1항	불가양의 개인적 권리로서 언어적 권리
	제3조 제2항	언어공동체의 집단적 권리로서 언어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7조를 보면 “종족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개인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분명 소수언어 사용자를 위한 인권과 관련된다. 인권은 무권리자의 권리로, 언어 소수자가 자신이 선택한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획득할 때 도덕적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다.

유네스코(UNESCO)는 「세계 언어 권리 선언(UDLR)」에서 인권과 언어적 권리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정하고 있다. 한 개인의 언어 권리를 문화 권리(cultural rights)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3조에 나타나는데, ‘개인의 모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와 ‘공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모국어가 차별받지 않고 사용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⁴ 언어적 차별을 경계하고 언어적 권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 권리는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언어 선택권”(이복남 2004: 212)을 내포하는 개념인 것이다.

인권을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한다면 언어적 권리 또한 차별과 불평등에 항거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Phillipson and Skutnabb-Kangas 1997). 인간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든지, 아동이든지 성인이든지, 다수어를 구사하든지 소수언어를 구사하든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개인마다 자신이 의사소통적으로 선호

4 1996년에 미국 언어학회인 Linguistics Society of America(LSA)에서도 미국의 언어 권리에 대해 선언 하였다. LSA에서도 유네스코의 언어 권리의 내용을 지지하고 이를 보장하고 있다.

하는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그러한 언어적 선택과 사용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고 심지어 교육과 문화 활동도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언어에 관한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Wright 2007).⁵

언어적 권리라는 것이 한 국가의 정책에 따라 혹은 법적인 보장을 통해 시혜적으로 구현되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실정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일지라도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 다문화 수형자들이 형벌로서 자유가 박탈되는 자유형에 처해져 있으나 기본적인 인권마저 침해당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라는 것이 개인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질과 직결됨을 상기해야 한다.

2) 다인종 다문화 수형자의 언어적 권리 관련 규정

(1) UN 규정

① UN 국제규약 및 규칙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 총회가 1966년에 결의 2200A(21)로 채택하고 1976년 3월 23일부터 발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수형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에는 소수집단의 언어 사용 권리와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5 Wright(2007)는 언어적 권리를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언어의 소극적 권리(negative right)는 사적인 공간에서 자신이 선택한 고유한 언어를 편견이나 박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언어의 적극적 권리(positive right)는 공적인 공간에서 사용할 뿐 아니라 고유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제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UN 피구금자 처우에 대한 최저 기준 규칙

「UN 피구금자 처우에 대한 최저 기준 규칙」은 1955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회 UN 범죄 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957년 7월 31일[결의 663 C(24)] 및 1977년 5월 13일[결의 2076(62)] UN 경제 사회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⁶을 규정하며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의 1부는 시설의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고 2부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언어적 권리와 관련된 규정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피구금자의 언어적 차별을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6조

(1) 본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30조

(3) 필요하고 실행 가능할 경우, 피구금자는 통역사를 통해 변호를 할 수 있다.

6 <https://url.kr/urvkay>(검색일: 2021.11.22).

금하고 통역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② UNODC 특수 요구를 지닌 수형자에 관한 핸드북(Handbook on Prisoners with Special Needs)⁷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는 2009년 특수 요구를 지닌 수형자에 관한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여러 소수자 수형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중에는 소수 민족·인종 및 토착민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에서는 소수자 수형자들은 문화, 전통, 종교, 언어, 민족에 따라 특수한 요구가 있고 교도소가 이를 적절히 대체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 민족이나 인종들은 그들의 언어적 요구가 묵살되어 심한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교도소의 규칙이나 규정을 소수자 수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받지 못할 경우도 있어 교도소 프로그램에서 격리되거나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또한 면회나 서신 교환 등에서도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아울러 소수자 수형자들이 느끼는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자신의 문화적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아울러 교도소 내에서도 적절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II. 소수 민족·인종 및 토착민

(Ethnic and Racial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2. 특수 요구 및 난제(Special needs and challenges)

소수 민족·인종 및 토착민은 형사사법제도에서 취약한 집단으로 구성되며 문화, 전통, 종교, 언어, 민족에 기반을 둔 특수 요구가 있고 교도소 당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요구는 모두에게 공통적이기도 하며 다른 것들은 수형자의 문화와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p. 59).

2.4 언어 장벽

소수집단 및 토착민의 언어적 요구가 무시되어 이들의 고립감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

7 <https://url.kr/qulhjp>(검색일: 2021.11.25.).

다. 예를 들어, 이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작성된 교도소 규칙 및 규정 복사본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징계 절차에서 적절한 통역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교도소 활동/사회 복귀 프로그램에서 통역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을 수 있고, 이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p. 61).

4.2.6 언어적 요구(Linguistic needs)

교도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수형자들은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작성된 교도소 규칙 및 규정의 서면 사본을 제공받아야 한다. 교도소 규칙 번역본이 존재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문맹자를 포함하여 그들이 모든 요점이 이해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교도소 내 모든 활동에서도 과도하게 대표되는 집단(소수집단 및 토착민)*이 교도소 프로그램에서 배제되거나 격리되지 않도록 번역 및 설명을 제공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도소 당국은 교도소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된 자료가 교도소 도서관에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수 민족·인종 및 토착민이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했다고 하여 처벌받아서 안 된다. 면회하는 동안 모국어로 소통하고 서신 교환을 모국어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특정 수형자에 대한 보안과 관련된 고려 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들에게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서신에 대한 선택적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p. 71).

4. 소수 민족·인종 및 토착민의 요구에 대한 대처

4.2.9 교도소 프로그램

B. 특수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에서 지역사회 단체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수형자와 외부 세계 간의 연결을 유지하고, 자원의 압박을 완화하며, 교도소의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하다. 소수집단과 토착민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들이 교도소 제도 내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일부 문화권에서는 해당 공동체와의 분리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 단체들은 민족, 인종 또는 혈통에 속하는 수형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 관련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문화 관련 프로그램들의 제공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며, 과도하게 대표되는 집단(소수집

* '과도하게 대표되는 집단(overrepresented group)'은 형사사법제도의 통제 내에서 어떤 집단의 비율이 일반 대중 내 그 집단의 비율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overrepresented group'을 교도소 내의 민족적, 인종적 소수자와 토착민과 동일한 표현으로 본다.

단 및 토착민)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 필수 수행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하여 받을 수 있는 간접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기도 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대다수의 교도소 제도에서는 소수집단의 여성 구성원 또는 여성 토착민의 젠더 특수 요구와 문화적, 정신적, 종교적 요구를 모두 다루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교도소 당국은 여성과 함께 일하는 토착집단 및 소수집단과 협력하여 소수집단 여성 또는 여성 토착민 범죄자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p. 73).

(2) 유럽 인권 협약

유럽 이사회 집행위원회(1973)는 UN(UN 인권 고등 관무관실, 1957)이 채택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을 원형으로 하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럽 최저기준규칙(the Europea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을 채택하였다(구금 시설 공중보건의사협의회(역) 2007: 11).

또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기반으로 일반 수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와 더불어 외국인 수용자 및 교도소 교육에 관한 권고를 1989, 2006, 2012년에 제시하였

외국인 수용자 및 교도소 교육에 관한 권고*

① 외국인 수용자를 포함하여 모든 수용자는 본인의 배경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에 적합하고 노동시장에 맞춰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교육 프로그램은 최소한 기초 교육, 현대 외국어, 직업 교육, 컴퓨터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 구금된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정 기구는 해당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대해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④ 교육은 체계적으로 수용자의 처우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교육을 포함한 모든 수용자를 위한 구금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⑤ 교도소 이송 또는 석방 후에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할 수 있어야 하며 취득한 모든 자

* <https://url.kr/2spybh>(검색일: 2021.09.28.).

격은 사회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⑥ 교도소 행정 부처는 필요할 경우 외국인 역류자의 교육 접근권이 떨어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⁸

UN 국제규약 및 규칙이나 유럽 인권 협약에서는 소수민족 혹은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수형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에 외국인 수형자들은 능력 있는 통역사를 통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며, 교도소 내 다인종 다문화 수형자들에게는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3. 미국의 다인종 다문화 수형자의 언어적 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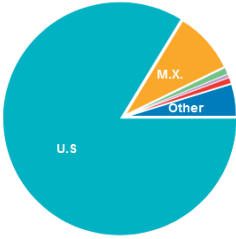
1) 미국 다인종 다문화 수형자 현황

미국 연방 및 주정부 교정 시설의 외국인인 총 수형자 수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역류 중인 자를 제외하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인 연방 수형자의 18% (174,400명 중 31,500명)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 교도소의 외국인 수형자 99%와 연방 교도소의 외국인 수형자 87%가 1년 이상의 양형을 받았다.⁹ 미연방 교도소 수형자의 인종은 백인이 57.9%, 흑인 38.1%, 원주민 2.5%, 아시아인 1.5%이다.¹⁰

⁸ <https://url.kr/2spybh>(검색일: 2021.0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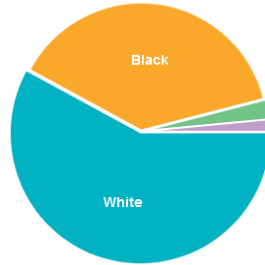
⁹ <https://bjs.ojp.gov/content/pub/pdf/p19.pdf>(검색일: 2021.11.25.).

¹⁰ https://www.bop.gov/about/statistics/statistics_inmate_race.jsp(검색일: 2021.11.25.).



Country	# of Inmates	% of Inmates
Colombia	1,606	1.0%
Cuba	795	0.5%
Dominican Republic	1,336	0.9%
Mexico	14,097	9.1%
Other/Unknown	7,400	4.8%
United States	130,295	83.8%

그림 1. 미연방 수형자의 시민권



Race	# of Inmates	% of Inmates
Asian	2,337	1.5%
Black	59,332	38.1%
Native American	3,819	2.5%
White	90,041	57.9%

그림 2. 미연방 수형자의 인종

자료: 미국 연방 교도소.

2) 관련 규정

(1) 행정명령 -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LEP)을 가진 자를 위한 언어 접근성 계획

1974년 연방 대법원은 Lau v. Nichols 사건에서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에서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금지에 언어적 차별을 포함한다고 결정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해당 기준을 공공 분야에 적용하려고 하였다.¹¹ 이에 따라 2000년 8월 11일 클린턴 대통령은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자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Improving Access to Services for Person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에 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13166호¹²에 서명하였다. 해당 행정명령은 연방 기관은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토하여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서비스에 대

11 <https://url.kr/9jakzf>(검색일: 2021.11.25.).

12 <https://url.kr/us2q45>(검색일: 2021.11.25.).

한 유의미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도록 하였다.¹³ 이에 따라 연방 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본 임무와 일관되고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게 유의미한 서비스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¹⁴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주정부에서도 대통령 행정명령과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려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언어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예를 들어, 뉴욕¹⁵, 매사추세츠¹⁶, 뉴저지¹⁷, 워싱턴 주¹⁸, 위스콘신¹⁹ 등이 언어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 주의 LEP 개인을 위한 언어 접근성 계획의 일부 부분은 다음과 같다.²⁰

LEP 개인을 위한 언어 접근성 계획

주정부 기관: 뉴욕 주 교정 및 보호관찰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계획 발효일: 2012년 10월 5일

언어 접근성 코디네이터(Language Access Coordinator): Linda Hollmen

Part 1 – 개요

행정명령 제26호(주 전체 언어 접근성 정책)에 따라 교정 및 보호관찰부(DOCCS)는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기관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에 유의미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Part 2 – LEP 인구의 언어 요구 검토

교정 및 보호관찰부의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의 총합은 3,505명이다.

13 이와 관련하여 미연방 법무부가 2011년에 작성한 “언어 접근성 평가 및 계획 수단에 관한 연방 기관의 수행 및 연방 지원 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각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https://url.kr/gqzljc>(검색일: 2021.11.24.).

14 <https://url.kr/gkrf7x>(검색일: 2021.11.22.).

15 <https://url.kr/buws12>(검색일: 2021.11.24.).

16 <https://www.masslegalservices.org/content/doc-lap>(검색일: 2021.11.24.).

17 <https://www.state.nj.us/corrections/pages/index.shtml>(검색일: 2021.11.24.).

18 <https://url.kr/9z71vg>(검색일: 2021.11.24.).

19 <https://url.kr/dwr1ei>(검색일: 2021.11.24.).

20 <https://url.kr/5ldfio>(검색일: 2021.11.26.).

본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LEP 개인이 구사하는 상위 7개 언어는 다음과 같다.

언어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예상 LEP 개인 수
스페인어	3,348
중국어	82
한국어	12
아이티어/크리올어	8
러시아어	8
폴란드어	6
이탈리아어	1

본 기관이 LEP 개인과의 연락 빈도는 다음과 같다고 정했다.

교정기관 또는 보호관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93,000명이다. 해당 수치 중 3,505명이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LEP)을 가지고 있다. 해당 개인들과의 연락은 매일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해당자의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도 포함된다.

Part 3 – 언어 지원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공지 및 봉사

본 기관은 본 계획 Part 2 표에 해당하는 언어로 다음을 통해 LEP 개인들에게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통지한다.

- LEP 개인들에게 본 기관 직원들이 직접 통지한다.
 - 어떠한 방법인가? 범죄자 사회복귀 코디네이터(Offender Rehabilitation Coordinator), 보안 직원, 교육 및 직업교육 직원, 기타 프로그램 서비스 직원, 보건 서비스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직원, 보호관찰 직원이 직접 접촉하여 통지한다.
- 언어 지원 서비스에 관한 안내서/소책자
 - 기관 내 공공장소
 - 기타 기관의 서비스 영역
- 언어 지원 서비스에 관한 표식
- 기관 내 공공장소
- 기타 기관의 서비스 영역
- 학교, 신념 기반의 집단, 기타 지역사회 단체들의 봉사 및 발표
 - 대상으로 하는 LEP 인구는 누구인가? 본 계획 Part 2 표에 해당하는 7개의 언어에 해당하는 자.
 - LEP 개인의 모국어로 제공되는 지역 및 비영어권 매체
 - 비영어권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전화 보이스 메뉴

해당 언어:

- 기타(설명하십시오) - 범죄자 입소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Part 4 -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

본 기관은 누가 LEP인지, 해당 개인의 모국어가 무엇인지, 대면 접촉인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관리한다.

- "I Speak" 포스터 및 시각 보조 교재
- 수용소 직원이 경험에 따라 해당 결정을 내리며, 필요할 경우 이중 언어 사용자 직원들의 도움을 받는다.
- 기타(설명하십시오) - 직원이 수용소에서 구두 인터뷰를 통해 언어 능력을 결정한다. 모국어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기타 언어 또는 이중 언어 등으로 한다. 사용하는 언어가 결정된 후, 스페인어 또는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은 영어 구술 능력이 평가된다.

A. 구술 통역 서비스

B. 서면 문서 번역

Part 5 - 직원 훈련

본 기관에서 언어 접근성 관련 사안에 관하여 직원 훈련을 담당하는 자: LAC와 협력하는 Training Academy 관리자

직원 훈련은 다음을 포함한다.

- LEP 개인들에게 이익 및 서비스에 대한 유의미한 접근을 제공할 법적 의무
- 언어 지원 서비스 접근 방법
- 통역자와의 협력 방법
-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 민감성
- LEP 개인들의 언어 필요 및 이들에게 기관에서 제공하는 언어 서비스에 관한 기록화
- 서면 번역 서비스를 받는 방법

Part 6 - 운영

감시

본 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LAC는 다음에 대하여 기관의 이행을 감시한다.

LAC는 LEP 개인들에게 무료 언어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홍보하는 표식을 공공장소에 눈에 잘 띄게 하도록 한다. LAC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기존 문서를 검토하고 필수 서류로 번역이 필요한 새로운 문서를 결정한다.

컴퓨터 기반 보고서를 활용하여 LEP 개인과 번역 서비스 요청에 관한 기록을 한다.

고발

본 기관은 일반인과 본 서비스로 제공되는 언어로 LEP 개인들이 차별을 받았고 여겨질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는 정보를 제공한다. DOCCS가 제공하는 정보는 언제, 어떻게 고발을 접수해야 하는지 방법을 설명한다. 해당 기관은 LEP 지위 또는 요구에 따른 차별에 대해 고발을 접수한 개인에 대하여 보복이나 다른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본 기관은 고발을 접수할 권리에 관한 정보와 고발 접수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한다.

표준 고발 양식은 일반인의 요청에 따라 7개의 언어로 이용 가능하다. 고발을 접수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정보는 7개의 언어로 일반인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된다. 또한 기관 지침에는 범죄자, 직원 및 방문자의 고발 처리 시안을 다룬다.

- 지침 #4040, “수형자 불만 프로그램”
- 지침 #2602, “다양성 관리 고발”
- 지침 #2611, “차별적 대우 고발 - 방문자를 위한 절차”

뉴욕 주의 계획을 살펴보면 LEP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자신들에게 제공될 무료 언어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지한다. 아울러 입소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어적 지원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도소 내에서도 이중 언어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언어로 인한 차별이나 서비스의 불만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2) 미국 변호사협회의 규정

미국 변호사협회(ABA)는 2010년 「수형자 대우에 관한 형사사법기준」을 규정하였다.²¹ 외국인 수형자들이 국적이나 언어 등으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종교적이거나 언어적, 문화적으로

21 <https://url.kr/ymszko>(검색일: 2021.11.24).

특수한 요구가 있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형자 대우에 관한 형사사법기준

(Criminal Justice Standards on Treatment of Prisoners)

기준 23-7.1 수형자에 대한 존중

- (a) 교정 당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형자를 대해야 하며, 인종, 성별, 성적 성향, 성적체성, 종교, 언어, 국적, 시민권, 연령,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근거로 한 희롱, 괴롭힘, 비하 언어 또는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 (b) 교정 당국은 다른 수형자에 의해 그러한 차별, 희롱 또는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과 관행을 시행해야 한다.

기준 23-7.2 장애 및 다른 특수 요구가 있는 수형자

- (b)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애는 없지만 교도소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형자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 요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수형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을 받아야 한다. 교정 당국은 그러한 수형자를 위해 방 배치, 의료 서비스, 작업 과제, 음식 서비스, 대우, 운동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 (c) 보안 또는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수형자는 장애 또는 다른 특수 요구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d) 수용 불가능한 장애 또는 다른 특수 요구로 인하여 고용 및 교육 기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어서 모범 행위에 대한 양형 감소 불가, 징계, 또는 가석방 거부와 같은 불리한 결과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수형자는 대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시간의 모범 행위 시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미국의 다인종 다문화 수형자 관련 프로그램

미연방 교도소는 일반적으로 4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제2언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성인계속교육(Adult Continuing Education: ACE), 통신교육(Correspondence Education)이 그것이다.²²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글쓰기와 읽기 강좌, 제2언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육아 수업, 건강 교육, 성인계속교육, 도서관 서비스, 여가 활동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자 격시험(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GED) 합격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최소 240시간의 글쓰기와 읽기 강좌를 듣거나 GED에 합격해야 한다. 비영어권 수형자는 반드시 ESL을 수강해야 한다.²³ ESL은 수형자들이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자 직원 교육자와 수형자 교육자들이 교육하며 수형자가 영어에 능통하게 되면 GED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많지는 않지만 연방 교도소 중 스페인어로 GED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²⁴ 교도소 도서관은 다양한 소설, 논픽션, 잡지, 신문, 참고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또한 수형자들은 법률 조사를 하거나 법률 문서 준비를 위해 법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허용된다.²⁵

4. 영국의 다인종 다문화 수형자의 언어적 처우

1) 영국 다인종 다문화 수형자 현황

2020년 3월 기준으로 영국 및 웨일즈의 흑인, 아시아인 또는 소수인종(Black, Asian or Minority Ethnic: BAME) 수형자는 22,425명으로 전체 수형자 중 27%를 차지하고 백인 인종은 59,946명으로 전체 수형자 중 73%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비율은 2013년부터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Ministry of Justice 2020: 5). 종교의 경우 현재 수형자의 47%가 기독교로 가장 일반적인 종교 또는 신앙이었다. 그다음으로 무교의 비율이 31%로 기독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22 <https://prisonerresource.com/education-federal-bureau-prisons/>(검색일: 2021.11.24.).

23 https://www.bop.gov/inmates/custody_and_care/education.jsp(검색일: 2021.11.24.).

24 <https://prisonerresource.com/education-federal-bureau-prisons/>(검색일: 2021.11.24.).

25 https://www.bop.gov/inmates/custody_and_care/education.jsp(검색일: 2021.11.24.).

Figure 1.1: Prison Population by Protected Characteristic, England and Wales, 2019/2020
 (Source: OMSQ, Tables 1.1 and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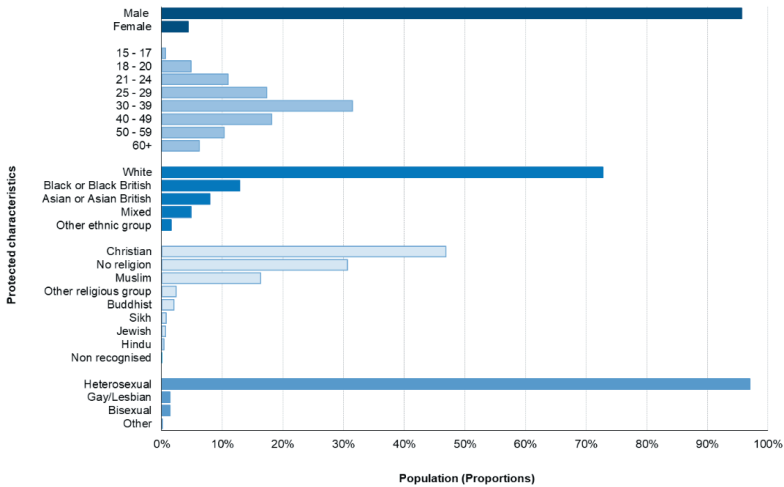


그림 3. 2019/2020 영국 및 웨일즈 수형자 특성

자료: 2019/2020 영국 법무부 통계 보고서.

(Ministry of Justice 2020: 5).

2) 관련 규정

(1) 수형자의 권리 관련 규정

영국에서는 수형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육 사업은 물론 취미를 위한 수업 등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교육 수업은 교도소 내에 마련되어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 원격 수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견습, 기술, 아동 및 학습법

(Apprenticeships,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 2009)

제86조 19세 이상 및 성인 구금 시설에 있는 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1) 해당 장관은 다음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a) EHC 계획이 적용되는 25세 미만인 사람을 제외한 19세 이상에게 적합한 교육,

- (b) 성인 구금자에게 적합한 교육,
- (c) a호 및 b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합한 훈련.

1999년 교정 시설 규칙(Prison Rules 1999)

제32조 교육

(1)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교육 시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형자는 이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2)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교육 수업은 모든 교도소에 마련되어야 하고, 여가 시간에 원격 수업, 개인 학습, 취미 수업 등을 통해 교육 향상을 희망하는 수형자에게 적절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3) 특수 수업이 필요한 수형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필요할 경우, 통상 근로시간 내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영국의 다인종 다문화 수형자 관련 프로그램

(1) 수형자 교육 프로그램

영국은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ESOL)가 수형자에게도 제공된다. Education & Training Foundation 웹사이트²⁶에서는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를 포함하여 범죄자 영어 교육에 관한 교사용 지침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도소 교육에 관한 가이드북도 제공하고 있다.²⁷

해당 사이트는 교도소 내 학습자를 숙달도에 따라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로 나누어도 해당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를 위한 자가 학습 워크북”²⁸에는 교도소에서의 식사(메뉴 읽기, 건강하게 먹기, 음식 관련된 대화), 석방 후 생활(주거지, 금전, 일상생활), 남성 건강관리(건강관리 종사자, 나의 건강에 관한 대화, 건강관리 받기)에 관한 학습 자료를 워드와 PDF 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교도소 내 직업 및 학습”에는 교도소 내의 직업 및

26 <https://url.kr/jxbnop>(검색일: 2021.11.22).

27 <https://url.kr/zapf8k>(검색일: 2021.11.22).

28 <https://url.kr/597u6z>(검색일: 2021.11.22).

학습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읽기, 듣기, 쓰기, 단어 활동이 제공된다. 해당 학습의 목적은 교도소 내 직업에 관하여 논하고 질문하기, 직업 변경 신청서 작성, 교도소 내 직업 관련 단어 이해, 임무에 대한 설명 등이 있다.

영국 정부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교도소 교육 통계 자료²⁹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53,247명이 초기 영어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자의 57%가 영어 초급(entry level 1, 2, 3), 30%가 레벨 1, 13%가 레벨 2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의 수는 17,680명이고, 그 중 51%(9,038명)가 최소 하나의 레벨을 수료하였다고 한다.³⁰

(2) 수형자를 위한 정보 자료

영국은 수형자를 위한 정보 자료(information packs)가 제공된다. 2010년 기준으로 27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Barnoux and Wood 2013: 243). 해당 번역본은 외국인 수형자로 대표되는 159개국 중 128개국 출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이에 따라 대다수 외국인 수형자가 본인의 언어로 이용 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9개국 중 31개국 출신자들을 위한 번역본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당 31개국 출신자들은 외국인 수형자의 7%를 차지하기에 같은 나라 출신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지 않는 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Barnoux and Wood 2013: 243).

(3) 영국의 다문화 다인종 수형자들을 위한 언어적 지원 노력

영국 교도소 조사국(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rison)의 2010년 연간보고서(HM Inspectorate of Prisons 2010)에 따르면 통역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기준 미달이었고 외국인들은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통역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³¹

29 <https://url.kr/njdbty>(검색일: 2021.11.24.).

30 <https://url.kr/njdbty>(검색일: 2021.11.24.).

31 <http://www.prisonreformtrust.org.uk/subsection.asp?id=185>(검색일: 2021.11.24.).

이와 관련하여 영국 교도소에서의 외국인 수형자의 불만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수형자들은 교도소 직원들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해 종종 불만을 느끼며, 모국어로 된 읽을 자료가 거의 없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잘못 이해하여 (사위 시설 이용, 단체 생활, 매점 이용 등)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Bhui 2009: 159).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수형자가 당국에 이의 제기를 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흔히 발생하는 사안은 외국인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중개자로 도움을 받기에, 이러한 중개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정보 자료가 모국어로 번역되어 있고 다른 제도를 통해 많은 수형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소수언어 집단에 속한 수형자들은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여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같은 나라 출신 수형자가 없을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Richards et al, 1995: 159).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구금될 당시 수형자의 영어 수준을 평가하고,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기존 수형자를 파악하여 비슷한 국가 출신자들과 같은 시설에 수용되게 하는 것이다. 구금 중 수형자의 정신 건강을 위해 적합한 번역 서비스가 보장되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지침이 영국에는 존재하지 않기에, 이러한 조치에 대한 평가가 일관되게 수행되고 있지 않으며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또 다른 개선 방안으로 교도소 도서관에 외국어 섹션을 만들어 다양한 언어 매체와 문서 및 정보 번역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원에 대한 외국어 능력 훈련이다. 많은 투입 비용이 필요하지만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고립된 외국 수형자와의 의사소통이 개선될 수 있다(Barnoux and Wood 2013: 243-244)고 지적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미국과 영국은 긴 이민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다문화 다인종 수형자들의 처우와 언어적 지원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

해서 다문화 다인종 수형자들의 언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단일국가, 단일민족, 단일 언어 정체성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언어 간의 공존 혹은 고유 언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지 못하였다(김하수·조태린 2008, 박휴용 2005, 신동일·심우진 2013). 다문화 사회에서 언어적 권리와 인권의 수호라는 기본적 원칙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문화 다인종 수형자들의 기본권 차원에서 언어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다문화 다인종 수형자들의 언어적 지원이나 학습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으로, 영국의 경우에는 규정으로 다문화 다인종 수형자들의 언어적 권리와 학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 수용자 처우 지침」 제4조에는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 특성에 맞는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의 행정명령이나 영국의 규정에 비해 소략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 법률이나 규칙은 최소한의 것이며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이를 명시하여 다문화 다인종 수형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 다인종 수형자들의 한국어 수준을 파악하여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미국은 ‘제한된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통역이나 번역 등의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입소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리고 있다. 영국은 더 나아가 초기 언어 레벨 테스트를 통해 수형자들의 영어 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수준에 맞는 언어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다인종 수형자들의 국적은 40여 개국이고 각자의 언어로 교정 시설 내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일상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형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파악하여 숙달도에 따른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초급, 중급, 고급의 숙달도로 나누어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ESOL)를 수형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현재 한국의 한국어 교육 과정은 교육 인원의 제한, 1년 2학기제로 주 1회 2시간 내외의 짧은 교육 시간(천안교도소 2010)과 국고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외국인 수형자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³²

셋째, 다문화 다인종 수형자들의 고립감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미국은 LEP 개인의 모국어로 제공되는 지역 및 비영어권 매체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무려 128개 언어로 수형자를 위한 정보(information pack)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 수용자 처우 지침」 제5조에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1명 이상의 공무원 등을 교화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 면담이나 고충 해소, 종교 관계자와의 접촉 주선, 통역, 번역, 영사 등 관계 기관과의 연락 업무를 등을 부여하고 있다. 그 전담 요원은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담 요원과의 면담이나 영사와의 면담은 수형자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담 직원의 경우에도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다수 언어 중심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³³ 전담 직원이 없거나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수형자가 없다면 해당 수형자는 교정 시설 내에서 심각한 고립감에 빠질 수 있다. 식사나 샤워, 교육 등의 교정 시설 내의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규율을 어기게 될 수도 있어, 고과점수에 의해 부여되는 형의 완화처분을 받는 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수형자들과의 언어적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아 소외감을 느끼거나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수형자들의 고립감을 덜어 주기 위해서 교정 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수형자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책자로 제공해야 한다. 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불안을 덜 수 있어 수형 생활에

32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안정된 수용생활 도모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글교육을 희망하는 외국인 수형자에게 각 기관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개 주1회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의 교육을 실시한다. 한글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을 교육하며 대전교도소는 2001년부터, 천안과 청주 여자교도소는 2007년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다(박형민 외 2016: 59).

33 2009년 14명(중국어 5명, 베트남어 3명, 몽골어 2명, 러시아어 2명, 스페인어 2명)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5명, 2011년에는 78명, 2012년 66명, 2013년 50명을 채용하였으며, 2016년 당시 외국인 전담 직원은 중국어가 176명, 몽골어가 12명, 러시아어가 11명, 베트남어가 10명, 일본어가 7명 등이다(박형민 외 2016: 60).

도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자국어로 된 소설과 비소설, 잡지, 영상 자료 등의 다양한 매체를 구비해 해당 언어권의 수행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의 수행자의 언어권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수행자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수행자의 심리적 안정과 수행 생활의 적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2010년부터 외국인 전용 교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재소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는 교정의 장애로 작용한다. 누구에게나 언어와 문화를 누릴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다문화 다인종의 수행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자신의 문화를 누리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수사나 재판, 수행 생활에서 모국어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최소한의 요구와 필요를 표현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도 그들에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언어적 권리는 인권의 수호라는 원칙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이므로 인종이나 국적,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교신: 서경숙(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어자문관)(kay0616@scourt.go.kr)

Correspondence: Kyoung Sook Suh (Supreme Court, Korean Language Adviser)(kay0616@scourt.go.kr)

2022.01.07. 접수, 2022.02.07. 심사, 2022.02.08. 게재확정

참고문헌

- 고대영, 2021, 국제인권단체 화성 외국인보호소 '새우껍기' 사건, 국제인권규약 위반, 이투데이.
- 구금 시설 공중보건의사협의회(역), 2007, WHO 구금 시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침서.
- 김하수·조태린, 2008,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사회언어학, 16(1), 79-104.

- 김학성, 2009,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矯正研究, 44, 한국교정학회, 173-198.
- 류성진, 2019, 공공영역에서 언어적 권리의 보장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언어적 권리, 公法學研究, 20-4, 한국비교공법학회, 99-128.
- 박형민 외, 2016,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형사정책 방향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휴용, 2005,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언어 인권에 대한 언어생태론적 고찰, 아세아연구, 48(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5-232.
- 법무부, 2021, 교정통계연보.
- 서범정, 2006, 실무연구(實務研究): 국제수형자이송법(國際受刑者移送法) 해설(解說), 법조, 55(1), 법조협회, 309-347.
- 신동일·심우진, 2013,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언어 권리의 침해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 51, 151-180.
- 윤옥경·이현영, 2011, 외국인수형자의 교정처우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 矯正研究, 50, 61-88.
- 이복남, 2004, EU 언어 정책, EU연구, 15,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11-237.
- 천안교도소, 2010, 외국인수형자 종합 처우계획.
- America Bar Association, <https://url.kr/ymszko>.
- Barnoux, M., and Wood, J., 2013, The specific needs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and the threat to their mental health from being imprisoned in a foreign countr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8(2), 240-246.
- Bhui, H. S, 2009, Foreign national prisoners: Issues and debates, In H. S. Bhui (Ed.), Race and criminal justice. London: SAGE, 154-169.
- Christopher Zoukis, Education in the Federal Bureau of Prisons. Zoukis Consulting Group, 2013, <https://prisonerresource.com/education-federal-bureau-prisons/>.
- Digital.gov, Improving Access to Services for People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EO 13166), <https://url.kr/gkrf7x>.
- E. Ann Carson, Prisoners in 2019,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7, <https://bjs.ojp.gov/content/pub/pdf/p19.pdf>.
- Federal Bureau of Prisons, 2021, Inmate Race, https://www.bop.gov/about/statistics/statistics_inmate_race.jsp.
- Federal Bureau of Prisons, Education Programs, https://www.bop.gov/inmates/custody_and_care/education.jsp.
- Frans Lemmers, Educational Programmes for Foreign Prisoners in European Countries, Confederation of European Probation, 1, <https://url.kr/2spybh>.

- HM Inspectorate of Prisons, 2010, Annual Report 2008-2009.
LEP, <https://url.kr/dwr1ei>.
LEP, <https://url.kr/gqzljc>.
United Nations, 1955, <https://url.kr/urvkay>.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09, <https://url.kr/qualhjp>.
Mass Legal Services, <https://www.masslegalservices.org/content/doc-lap>.
Migration Policy Institute, <https://url.kr/5ldfio>.
Ministry of Justice, 2020, 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Offender Equalities Annual Report.
Ministry of Justice, Prison Education Statistics April 2019 to March 2020, <https://url.kr/njdbty>.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https://url.kr/us2q45>.
New York State Government, <https://url.kr/buws12>.
Official Site of the State of New Jersey, <https://www.state.nj.us/corrections/pages/index.shtml>.
Phillipson, R. and Skutnabb-Kangas, T., 1997, Linguistics human rights and English in Europe. *World English*, 16(1), 27-43.
Prison Reform Trust, 2004, Asylum Seekers and Foreign Nationals, <http://www.prisonreformtrust.org.uk/subsection.asp?id=185>.
Richards, M., McWilliams, B., Batten, N., Cameron, C., and Cutler, J., 1995, Foreign Nationals in English Prisons: I. Family Ties and their Maintenance. *The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2), 158-175.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undation, <https://url.kr/jxbnop>.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undation, <https://url.kr/597u6z>.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undation, <https://url.kr/zapf8k>.
USC Price Tomas Rivera Policy Institute, <https://url.kr/9jakzf>.
Washington State Government, <https://url.kr/9z71vg>.
Wright, S., 2007, The right to speak one's own language: Reflection on Theory and Practice. *Language Policy*, 6, 203-224.

Linguistic Support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thnocultural Prison Inm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Kyoung Sook Su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applicable policies to support the linguistic rights of ethnocultural prison inmates in South Korea. We review prisoners' linguistic rights as stipulated by the United Nations and European Union as well as how these rights are reflected policy-wise i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In these two nations, clear administrative orders or regulations require linguistic and educational support for imprisoned linguistic minorities. In addition, linguistic minorities are identified and appropriate measures are taken, such as providing them with native language interpretation and English education to prevent complete isolation.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examined linguistic support policies show concrete and practical methods that South Korea can apply to provide stronger customized Korean language education services and better native language support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ethnocultural prison inmates in South Korea is increasing.

Keywords Ethnocultural Prison Inmates, Linguistic Rights, Korean Language Education Service, Native Language Service

* Supreme Court, Korean Syntax, Korean Language Advisor, kay0616@scourt.go.kr